

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77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4.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13. 1. 10 「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: 부단장 직제 신설(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)
- 나. 부단장의 임무 신설(안 제25조제3항)
 -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고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다.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: 부단장 추가(안 제27조제2항)
- 라. 자율방재단 연중 활동계획서 제출기간 변경(안 제29조제7항)
 - 10월 말 → 7월 말

3. 근거법규 : 「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개선의견(제27조제2항)
 - 1) -----단장, 부단장, 방재단-----단,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도록 한다.
 - 2) 검토의견 반영결과 : 반영불가 (협의회의 주요 구성원인 동별 단장은 해당 동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되고, 동별 단장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므로 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특정 성별 비율 상한선(70%)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)
- 라. 입법예고 : 2013. 3. 8 ~ 2013. 4. 1.(의견 없었음)

(제156회-본 회의 제2차부록)

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단장 1인, 간사 1인”을 “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”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“단장”을 “단장과 부단장”으로 “단원”을 “동방재단 및 단체 대표”로 한다.

제25조 중 제3항을 “③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고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”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, 같은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조제5항을 제6항으로, “단장,”을 “단장, 부단장,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단장,”을 “단장, 부단장,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7항 중 “10월말”을 “7월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지역자율방재단 구성) ① (생략) ② 방재단은 <u>단장 1인</u>, <u>간사 1인</u> 및 <u>단원</u>으로 구성한다. ③ <u>단장은 단원</u>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과 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,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. ④ ~ ⑨ (생략)</p> <p>제25조(임무 및 임기) ① ~ ② (생략) <u>〈신설〉</u></p> <p>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. ④ 동대표는 동방재단을 대표한다. ⑤ 단장, 간사,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제27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(생략) ② 협의회는 <u>단장</u>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 단체의 대표, 동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. ③ ~ ⑥ (생략)</p> <p>제29조(운영) ① ~ ⑥ (생략) ⑦ 단장은 매년 <u>10월 말</u>까지 다음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⑧ ~ ⑩ (생략)</p>	<p>제24조(지역자율방재단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 <u>단장 1명</u>, <u>부단장 1명</u>, <u>간사 1명</u> ----- ----- ③ <u>단장과 부단장- 동방재단 및 단체 대표</u> - ----- -----. ④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임무 및 임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고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⑥ <u>단장, 부단장, 간사,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7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단장, 부단장</u>, ----- ----- ----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<u>7월 말</u>----- ----- ----- ⑧ ~ ⑩ (현행과 같음)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77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3. 4. 3.(수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3. 4. 4.(목)
- 위원회심사 : 2013. 4. 15.(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2013. 1. 10 「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함

나. 주요골자

-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: 부단장 직제 신설(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)
- 부단장의 임무 신설(안 제25조제3항)
 -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고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: 부단장 추가(안 제27조제2항)
- 자율방재단 연중 활동계획서 제출기간 변경(안 제29조제7항)
 - ※ 10월 말 → 7월 말

4. 근거법령

「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권수)

○ 본 조례안은 2013. 1. 10 「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,

○ 제24조제3항 중 “단원”을 “동방재단 및 단체 대표”로 개정한 것을 단체대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관계로 “동방재단 대표 및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(이하 “단체대표”로 한다)”로 수정검토 바라며, 또한 제27조제2항 중 “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”는 제24조제3항에서 수정한 대로 “단체대표”로 수정검토 바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제24조에서 “단체대표”에 대한 용어 약칭에 대해서 우선 규정하고 제27조에서는 약칭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

개정안	수정안
<p>제24조(지역자율방재단 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단장과 부단장은 <u>동방재단 및 단체대표</u>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, 별지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. ④ ~ ⑨ (생략)</p> <p>제27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(생략) ② 협의회는 단장, 부단장, <u>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</u>, 동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. ③ ~ ⑥ (생략)</p>	<p>제24조(지역자율방재단 구성) ① (생략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----- <u>동방재단 대표 및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(이하 “단체대표”로 한다)</u> ----- ----- ④ ~ ⑨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7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----- <u>단체대표</u>, ----- ----- ----- ③ ~ ⑥ (개정안과 같음)</p>